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717
------	------

2026.6.1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2.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6.6.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이수연)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 12. 9월부터 「서울창업성장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 26.12.31.자로 만료예정므로,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신성장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을 지속 지원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5,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규모 : V1동 지상 5층 / 연면적 1,009㎡
- 공간현황 : 입주공간, 사무실, 교류·협력 공간 등

나. 위탁 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7. 1. 1.~ 2029.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7년 소요예산(안) : 1,078백만원(민간위탁금)

다. 위탁 사무

- 입주기업 모집, 선발, 계약 등 관리 및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이전 및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후속 R&D 프로그램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벤처투자자(VC), 액셀러레이터(ACC) 등을 통한 투자기관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타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해 협의한 사항

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12. 4.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
 - '12. 7. 제23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시-KIST 업무협약(MOU) 체결
 - '14. 6. 제253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17. 11. 제277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20. 9.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3. 3. 제316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4. 9. 제326회 임시회 재계약 보고
 - '25. 6. 수탁기관 법인격 변화(비영리→영리법인)에 따른 변경협약 체결
 - '26. 4.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6. 5.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특히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사무임

-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6. 5. 7.) 심의 결과: 적정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창업성장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조성하여 2012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융·복합기술,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에너지, 나노기술, 소재·부품 등 첨단기술 분야의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제공, 기술이전,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로 2022년 12월 서울시와 한국기술벤처재단 간 무상임대차 협약 체결(2년마다 갱신)에 따라 KIST 시설을 무상사용 중임.

< 서울창업성장지원센터 현황 >

- 위치: 성북구 화랑로 14길5(KIST V1동 1~5층)
- 규모: 1,009㎡
- 지원기업: 입주기업 20개사
- 위탁기관: 키스트이노베이션(주)(2024.5.~2026.12.)
- 주요사무
 - ▶ 입주기업 모집, 선발, 계약 등 관리 및 운영
 - ▶ 입주기업 지원(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지원 등) 및 보육
 - ▶ 기술컨설팅, 기술이전, R&D 등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 2026년도 예산: 1,064백만원
- 공간구성: 입주공간(20개실), 사무실, 교류·협력 공간 등

- 동 센터는 2012년 9월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KIST가 전액 출자한 한국기술벤처재단이 장기간 운영해 왔으며, 2025년 수탁법인의 법인격 변화(비영리→영리)에 따라 한국기술벤처재단을 승계한 키스트이노베이션(주)¹⁾이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현황 >

계약기간	수탁기관	협약 방식
2012.09.~2014.12.	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신규)
2015.01.~2017.12.	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재계약)
2018.01.~2020.12.	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재계약)
2021.01.~2022.12.	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재위탁)
2023.01.~2023.03.	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 일시연장
2023.04.~2023.04.	한국기술벤처재단	용역(수의계약)
2023.05.~2024.12.	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재위탁)
2025.01.~2026.12.	한국기술벤처재단 → 키스트이노베이션(주) ※ 수탁기관 법인격 변경에 따라 변경협약 체결(2025.06.)	민간위탁(재계약)

- 최근 3년간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입주기업 60개사(중복 포함)를 지원하여 총 매출 303억원, 투자유치 390억원, 신규고용 215명, 기술이전 193건, 특허출원·등록 443건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성과 >

(단위: 억원, 건, 명, 개사)

구 분	총매출 (실적/목표) (달성률)	투자유치 (실적/목표) (달성률)	신규고용	기술이전 (실적/목표) (달성률)	특허출원 / 등록	입주기업 수
합 계	303	390	215명	193	443건 (출원272, 등록171)	60
2025년	115/80 (144%)	66/75 (88%)	86명	50/50 (100%)	155건 (출원103, 등록52)	20
2024년	81/75 (108%)	256/70 (366%)	72명	72/50 (144%)	159건 (출원125, 등록34)	20
2023년	107/45 (238%)	68/65 (105%)	57명	71/40 (177%)	129건 (출원44, 등록85)	2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전략에 따라 한국기술벤처재단과 KIST 내부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능을 통합해 만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다만 총매출은 최근 3년간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투자유치 실적은 2024년 256억원에서 2025년 66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기술이전 실적도 2024년 72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동 센터는 첨단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성과의 경우 연도별 변동이 큰 만큼 향후 성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의 재위탁 타당성 검토

- 서울시는 서울창업성장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1회에 한정되어 있는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는 시장이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입주기업 선발 및 관리, 기술이전,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단순 시설관리보다 창업보육, 기술사업화, 투자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특히 동 센터는 KIST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기술이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운영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서울창업성장센터 재위탁에 대해 ‘적정’으로 의결(2026.5.7.)되어 재위탁 추진을 위한 절차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법적 근거, 사무의 전문성,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동 센터의 성과목표 설정에 대하여 ‘전년도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차년도 목표값을 기달성한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여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실제로 최근 3년간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매출액,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전년도 달성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년도 목표를 설정한 사례가 확인되어 성과목표가 기존 실적과 사업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목표는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서울시는 재위탁 이후 과거 실적과 사업여건, 입주기업 성장단계 등을 반영하여 목표 설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센터는 2012년부터 동일한 수탁기관이 장기간 운영해 왔고, KIST 소유 시설의 무상사용과 연구장비·전문인력·기술이전 네트워크 활용이

센터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운영구조는 첨단기술 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 사용과 주요 사업자원이 특정 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신규 민간기관의 실질적 진입 가능성과 공개모집의 경쟁성이 제한될 우려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 수탁기관인 키스트이노베이션(주)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시설 무상사용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수탁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공모 참여기관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공모지침과 협약서에 관련 조건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재위탁 공모 과정에서 KIST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과 범위,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조건 등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탁기관 선정시 특정 기관에 유리한 구조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17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2. 9월부터 「서울창업성장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6.12.31.자로 만료예정므로,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신성장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을 지속 지원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5,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규모 : V1동 지상 5층 / 연면적 1,009㎡
 - 공간현황 : 입주공간, 사무실, 교류·협력 공간 등

나. 위탁 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7. 1. 1.~ 2029.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7년 소요예산(안) : 1,078백만원(민간위탁금)

다. 위탁 사무

- 입주기업 모집, 선발, 계약 등 관리 및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이전 및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후속 R&D 프로그램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벤처투자자(VC), 액셀러레이터(ACC) 등을 통한 투자기관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타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해 협의한 사항

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12. 4.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
- '12. 7. 제23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시-KIST 업무협약(MOU) 체결
- '14. 6. 제253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17. 11. 제277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20. 9.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3. 3. 제316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4. 9. 제326회 임시회 재계약 보고
- '25. 6. 수탁기관 법인격 변화(비영리→영리법인)에 따른 변경협약 체결
- '26. 4.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6. 5.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특히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사무임
-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6. 5. 7.)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7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오선숙(☎ 2133-4876)
고민완(☎ 2133-4879)